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-1693호

영등포1-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공람 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11호(2005.12.22.)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8호(2010.01.21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8호(2016.01.14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23호(2023.06.08.)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1-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를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,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7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23. 9. 7. ~ 2023. 9. 22. (15일간)

나. 공람장소: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영등포구 당산로123 본관 4층, ☎2670-3804)

다. 공람내용: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서류

라. 의견제출방법

- 공람장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
- 스캔하여 전자우편(26703804@ydp.go.kr)으로 제출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
- 사 업 명 칭: 영등포1-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
- 위 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6-5번지 일대
- 시 행 면 적: 5,392.0㎡ (대지 3,930.4㎡ 및 도로 1,461.6㎡)
- 시 행 자: 영등포1-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
- 시 행 기 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건 축 계 획: 지하 6층/지상 34층, 공동주택 2개동(218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등

바. 기타사항

-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공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